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번지 일원 및 분당동 41번지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26.

성 남 시 장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나. 명 칭 :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명 : 하나자산신탁(주)
- 나. 대표자 : 민관식
-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38번지 일원 및 41번지
- 나. 면 적 : 231,037.0㎡

4.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6월
- 나. 준공예정일 : 2034년 2월

5. 참고사항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2025.10.15. 성남시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사항 확인 필요)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 031-729-37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성남시 수정구 고시 제2026-12호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성과를 제
공하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 도(L)	위 도(B)
	“붙	임	참	조”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				
소 재 지	수정구 신촌동 일원				
관 측 일	2026. 6. 22.				
성 과 보 관 장 소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표 지 의 재 질	철 재				
비 고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신설: 17점)				

지 적 기 준 점 목 록

지 기 번	적 준 점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도 (L)	위도 (B)	표고 (m)	비고	
		조본좌표계		중부좌표계		세계측지계					
		X(m)	Y(m)	X(m)	Y(m)	X(m)					Y(m)
보240					540351.72	209441.97				신설	
보241					540382.62	209242.27				신설	
411313417					540276.15	209237.92				신설	
411313418					540274.83	209362.37				신설	
411313419					540261.21	209483.93				신설	
411313420					540116.30	209461.37				신설	
411313421					540122.20	209416.00				신설	
411313422					540108.33	209353.32				신설	
411313423					540116.66	209330.83				신설	
411313424					540106.64	209290.56				신설	
411313425					540066.52	209301.71				신설	
411313426					540073.13	209335.17				신설	
411313427					540051.46	209323.01				신설	
411313428					540060.04	209353.87				신설	
411313429					540085.39	209354.30				신설	
411313430					540092.90	209421.61				신설	
411313431					540071.47	209456.90				신설	
		이		하		여		백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6-24호

고 시 문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하천의 명칭	탄 천		
점 용 자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성남지회	점용자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71번길 10, 성남아트리움 B1층
점 용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55(탄천 농구장 옆 공터)		
점 용 면 적	일시: 1,424.7㎡		
점 용 목 적	문화예술공연 개최	점 용 개 요	-
점 용 기 간	2026. 8. 8. ~2026. 8. 29. (매주 토요일 4일간)	기 타 사 항	-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6-25호

고 시 문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고시내용

연 번	점용 위 치	면적 (m ²)	점용 목적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성명	주소	
1	이매동 130	일 시: 25 m ² 영구: 1.75 m ²	생활안전 CCTV 구축	허가일 부터 영구	성남시 스마트도시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하천
2	대장동 666	일 시: 80 m ² 영구: 3.4 m ²					공유 수면